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27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9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별표 내 ‘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’의 수수료를 정함(제2조)
- 나. 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제2항제7호, 제8호의 띄어쓰기 정비(제3조)
- 다. 제5조(납부 방법)의 용어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 표현으로 정비(제5조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
- 2)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4. 8. 8.~ 8. 28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주민진료”를 “주민 진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“본인부담금”을 각각 “본인 부담금”으로 한다.

3.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

제5조 중 “당일”을 “그날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별 지

[별표]

수수료 및 진료비 (제2조 관련)

구분	종목	단위	금액	비고
1. 건강진단 결과서 및 제증명	가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	1통	3,000원	
	나.~아. (생략)	(생략)	(생략)	
2. 유료접종	가.~다. (생략)	(생략)	(생략)	
3. 검사	가.~바. 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</p> <p>① 삭 제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감염병 발생지역 <u>주민진료</u> 및 예방접종</p> <p><u>3.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</u></p> <p>4. ~ 6. (생 략)</p> <p>7.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<u>본인부담금</u></p> <p>8.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, 특수임무 유공자,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의 진료비 중 <u>본인부담금</u></p> <p>9. (생 략)</p>	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주민 진료</u> ----- --</p> <p><u>3.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<u>본인 부담금</u></p> <p>8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<u>본인</u> <u>부담금</u>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

제5조(납부방법)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한다.

[별표]

수수료 및 진료비 (제2조 관련)

구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 고
1. 건강진단 결과서 및 제증명	가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	1통	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」 제5조에 따른 수수료	
	나.~아. (생략)			
2. 유료접종	가.~다. (생략)			
3. 검사	가.~바. (생략)			(생략)

제5조(납부방법) -----
-----그날-----.

[별표]

수수료 및 진료비 (제2조 관련)

구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 고
1. 건강진단 결과서 및 제증명	가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	1통	3,000원	
	나.~아. (현행과 같음)			
2. 유료접종	가.~다. (현행과 같음)			
3. 검사	가.~바. (현행과 같음)			(현 행 과 같 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행정과 정유연
연 락 처	02-3153-9011